

# <범정 학술활동 시행 내규>

제정 : 2020. 4. 00.

## 제 1 장 총칙

제1조(배경) 이 내규는 2003년 4월 1일에 제정된 '범정학술논문상 시행 내규'를 근간으로 확대, 개편하여 제정되었다.

제2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생의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학술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학술활동의 구성) 범정 학술활동은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.

1. 범정 특강 및 세미나
2. 범정 추계학술제
3. 범정 학위논문상
4. 범정 연구논문상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학술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범정 학술위원회(이하 "학술위원회")를 두며, 학술활동의 진행과 관련된 자문,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을 수행한다.

② 학술위원회는 5개 학문계열(인문사회, 자연, 공학, 예체능, 의학)별로 각 1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.

③ 대학원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이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고,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을 간사로 한다.

## 제 2 장 범정 특강 및 세미나

제5조(대상) 단일 학과 또는 복수 학과 공동 주관의 특강 또는 세미나를 대상으로 하며, 그 명칭은 범정특강 또는 범정세미나로 한다.

제6조(신청) 대학원 총학생회에 신청된 특강 및 세미나를 대상으로 매 학년도의 분기별로 선정, 지원하며, 신청 및 선정은 해당 분기 시작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한다.

제7조(선정방법) 학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, 선발 기준은 학술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8조(지원내용) 특강비, 홍보비, 인쇄비에 대하여 지원하며,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범정추계학술제

제9조(대상)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(연구재학생 포함)이 주저자로 발표하는 연구논문 및 연구논문 초기안(Draft)을 대상으로 한다.

제10조(주관) 범정학술제는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.

제11조(조직) ① 대학원 총학생회 산하에 범정학술제 조직위원회(이하 조직위원회)를 두고 각 계열별 1인 내외의 위원을 선임하여 범정학술제의 준비 및 운영을 담당한다.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으로 한다. 위원은 총학생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
② 학술위원회의 위원은 조직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지원하도록 한다.

제12조(시상) ① 학술제에 발표된 우수한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할 수 있다.

1. 구두발표부문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
2. 포스터발표부문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

② 수상논문은 조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논문 중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.

제13조(논문집) 학술제에 발표된 논문을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한다.

#### 제 4 장 학위논문상

제14조(대상)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석사·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
제15조(선정방법)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.

제16조(시상) ① 석사·박사 학위논문 각각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학위수여 시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② 최우수상 석사·박사 각 2편 내외, 우수상 석사·박사 각 5편 이내를 선정한다. 다만, 선정할만한 우수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제 5 장 연구논문상 (연구장려장학금)

제17조(대상) 매 학기 본교 대학원에 재학(연구재학 포함) 중인 학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(SCI, SSCI, A&HCI, SCIE, SCOPUS 등) (이하 “학술지”)에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한 논문

제18조(선정방법) 학술지에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된 논문은 이 장학금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일이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, 매 학기 소정의 신청서 [주임교수 추천서, 논문게재(예정)확인서, 해당 논문의 별쇄본 포함]를 제출하여,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.

제19조(시상) ① 단독연구, 2인 공동연구, 3인 이상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하는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학술위원회는 대학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장려장학금의 지급범위를 결정한다.